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제2조의5로 하고,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2조의5(중전의 제2조의2) 중 “연구·교육 및 홍보”를 “연구·교육·홍보 등 기반구축”으로 한다.

제2조의2(기본계획의 수립) ①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(이하 “부정경쟁방지등”이라 한다)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세워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분석평가
3.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
4.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및 대응
5.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
6.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사항

7.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제협력

8.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제2조의3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2조의4(실태조사)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특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

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·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”를 “시·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,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「발명진흥법」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(이하 “분쟁조정”이라 한다)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,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
④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위반행위의 시정권고)”를 “(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)”

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 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”을 “위반행위의 중지,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, 향후 재발 방지, 그 밖에 시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 중 “시정권고”를 “시정권고 및 공표”로 한다.

제14조의2제6항 중 “영업비밀 침해행위”를 “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”로, “제11조”를 “제5조 또는 제11조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제2조의2”를 “제2조의5”로, “연구·교육·홍보”를 “연구·교육·홍보 등 기반구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7조제3항”을 “제7조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

이후 제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